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3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홍기원 · 서미화
한민수 · 이성윤 · 박 정
문대림 · 이수진 · 임미애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”라는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7조, 제20조, 제

27조, 제61조 및 제63조의3).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“함정어구(陷穽漁具)”를 “위장어업도구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함정어구”를 “위장어업도구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함정어구”를 “위장어업도구”로 한다.

제61조제2호 중 “함정어구”를 “위장어업도구”로 한다.

제63조의3제1항 중 “함정어구”를 “위장어업도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함정어구”를 “위장어업도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) ① · ② (생략)	제17조(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3. ----- -----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·그물· <u>함정어구</u> (陷穽漁具)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(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	나. ----- ----- ----- <u>위장어업</u> <u>도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2조 제2호 · 제2호의2 · 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· 전류를 사용하는 경우

4. 5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0조(해양보호생물의 포획·채취 등 금지)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·채취·이식·가공·유통·보관(가공·유통·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)·훼손(이하 “포획·채취등”이라 한다)하여서는 아니 되며,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·그물·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·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·채취등을 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해양보호생물의 포획·채취 등 금지) ① -----

-----위장

어업도구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)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양보호구역에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(보호구역을 포함한다)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유산(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이 포함된 경우에는 「자연공원법」 또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
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
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
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·채
취·이식·훼손하는 행위 또
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
여 폭발물·그물·함정어구를
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

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, 폭발물·그물·<u>함정어구</u>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	-----. ② ----- -----<u>위장어업도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